

신고번호		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		
제 호				
신고인	① 상 호 (사업장명)		② 전 화 번 호	
	③ 성 명 (대 표 자)			
④ 공 사 명 칭				
⑤ 공 사 장 소 재 지				
⑥ 특정기계·장비의 명칭, 형식 및 대수				
⑦ 공 사 실 시 기 간		년 월 일 ~ 년 월 일(일간)		
		작업개시	작업종료	실제작업일수
		시	시	일간
⑧소음·진동방지방법				
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인				

(뒤 쪽)

○ 변경 사항

일 자	내 용	확 인

※ 공사 시행 시 주의 사항

1.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·진동의 규제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(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).
2. 소음·진동의 억제를 위하여 신고 시에 제시한 방음시설설치 등 소음·진동 저감 대책을 계획대로 반드시 이행한 후 공사하시기 바랍니다.
3. (변경)신고한 기계·장비 외의 특정기계·장비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4. 사용기간 및 시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.
5. 저소음 건설기계·장비를 선택하여 사용하고, 가급적 시간대별로 분산 투입하시기 바랍니다.
6. 건설기계·장비의 운전·정비불량으로 인한 소음·진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7. 건설기계·장비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